

《증치세법》 공식 발표: 세제의 새로운 장, 개혁의 새로운 여정

2024.12

Issue 19

개요

얼마 전 마무리 된 제 14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3 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이하 《증치세법》이라 함) 초안 심사원고를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최초의 《증치세법》은 2026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되며, 31 년간 시행되어 온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초안)》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입법 과정을 돌이켜 보면,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은 2019 년 11 월 27 일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의견수렴본)》(이하 “의견수렴본”이라 함)을 발표했습니다. 2022 년 12 월과 2023 년 8 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초안)》(이하 “초안”이라 함)에 대해 2 번의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4 년 12 월 21 일부터 25 일까지 회의를 하여 초안에 대한 3 차 심의를 진행했으며, 상무위원회의 심사 의견과 여러 계층의 의견에 따라 초안을 재차 개정하여 《증치세법》을 최종적으로 완성 및 공포했습니다.

《증치세법》의 공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중국의 조세 법치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증치세는 중국의 가장 큰 세목이며, 입법을 통해 증치세를 법률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1994 년 이후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증치세 개혁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있었고, 증치세 정책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증치세 제도에 대한 보다 든든한 법률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 20 회 삼중전회의 “조세법정주의 원칙” 임무를 구현함에 있어 중요한 일환이 됩니다.

PwC 는 과거 의견수렴본¹ 및 초안 2 차 심사원고²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증치세법》과 초안 2 차 심사원고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분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Newsflash 에서는 향후 공표될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라 함)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고 요약하였습니다.** 《실시조례》가 해당 사항을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세 내용

一、《증치세법》과 초안 2 차 심사원고 간의 차이점

초안 2 차 심사원고와 비교할 때,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증치세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1. 입법 목적을 추가하여 《증치세법》이 고품질 발전, 징수 및 납부 규범화,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증치세법》의 후속 시행을 위한 지도 방법을 수립하였습니다.
2. 《증치세법》 중 “개인”이라는 개념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고 명확히 하여 현행 증치세 정책과 일치시켰습니다.
3. 입법 관련 수권 조항을 줄였으며, 과거 초안에서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한다고 규정한 일부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여기에는 과세거래로 간주되는 기타의 경우, 간이과세방법을 적용하는 특수 상황, 차액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특수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상기 수정과 관련하여 PwC는 과세거래로 간주되는 범위가 《증치세법》에 규정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과세거래로 간주되는 내용이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간이과세, 차액기준 매출액 산정 등의 특수 상황은 기타 면세, 추가공제 등 정책과 함께 제 25 조에 규정된 “국무원이 제정할 수 있는 증치세 특별 우대혜택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중외합작에 의한 해양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증치세 과세 방법 등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실물에 따라 증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 특수 규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5. 경외 단위와 개인이 경내에서 과세거래를 발생시킨 것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경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선택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현행 증치세 정책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납세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판매자가 경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했는지 여부와 구매자 자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는 향후 공표될 《실시조례》에서 명확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매입세액의 정의에서 “과세거래와 관련”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현행 증치세 정책과 일치시켰습니다. 《실시조례》에 관련 규정이나 보충 설명이 있는지 여부 및 비과세소득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계속해서 매입세액공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향후 주목해 봐야 합니다.
7. 면세 품목에서 “피임약 및 피임용구”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8. 증치세 특별 우대혜택 정책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위한 기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증치세법》 제 5 조에 따르면, 화물, 무형자산, 부동산 및 금융상품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과세거래로 간주하여 증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익을 위한 기부에 대해서는 세금 우대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공익사업에 대한 기여를 장려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9. “국무원은 증치세 우대혜택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적시에 실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경제 발전과 산업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증치세 우대정책을 적시에 조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10. 법적 관점에서 납세자가 “혜택을 포기한 경우 36 개월 동안은 해당 세금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현행 증치세 정책과 일치시켰습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납세자는 제외”라는 규정을 추가했는데, 이는 36 개월이라는 제한이 더이상 소규모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二、《실시조례》에서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내용

후속 공포될 예정인 《실시조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증치세 과세항목 주석 및 분류

《증치세법》에서는 과세항목을 크게 화물, 서비스, 무형자산 및 부동산 판매의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증치세는 3 가지 레벨의 세율 및 우대정책이 있으므로, 《실시조례》는 각 과세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분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 유형의 거래가 다양한 세율 및 세금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경내에서 소비되는 서비스, 무형자산의 정의

《증치세법》 규정에 따르면, 경내에서 발생한 과세거래란, “(본 조 제 2 항, 제 3 항 규정을 제외하고) 서비스/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무형자산이 경내에서 소비되거나 판매자가 경내의 단위 및 개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소비지 원칙을 도입했는데, 판매자가 경외의 단위와 개인인 거래의 경우, 《실시조례》에서는 “경내에서 발생한 소비”에 대한 판단 기준에 주목함으로써 경내 주체에게 증치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영세율 정책을 적용하는 국경 간 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범위

《증치세법》규정에 따르면, “경내의 단위 및 개인이 국무원이 규정한 범위 내의 서비스/무형자산을 국경 간 판매하는 경우, 세율이 0 입니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범위는 실시조례에서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현행 규정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기존의 “완전 경외 소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지 여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4. 혼합판매 사항 중 “주된 업무”에 대한 판단 방법

《증치세법》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발생한 하나의 과세거래가 둘 또는 그 이상의 세율, 징수율과 관련된 경우, 과세거래의 주된 업무에 따라 세율, 징수율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과세거래에 대해 하나의 가격만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세율 차이 또는 정책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시조례》에서는 “주된 업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5. 매입세액 관련 문제 명확화

- 《증치세법》에서는 대출서비스 매입 관련 이자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매입세액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시조례》에서 대출서비스 이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매입세액으로 명시할 지 여부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 《증치세법》에서는 불공제매입세액 내용에 “여기서 언급한 고정자산/무형자산/부동산은 상기 항목에 전용되는 고정자산/무형자산/부동산만을 지칭한다”라는 현행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시조례》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증치세법》은 “매입하여 소비에 직접 사용하는 요식업 서비스, 주민 일상 서비스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현행 규정하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실무상 “매입하여 소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실시조례》에서 추가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미공제매입세액 환급 정책의 구체적인 조치

《증치세법》에서는 “당기 매입세액이 당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하거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실시조례》 또는 후속 문건에서는 미공제매입세액의 환급 매커니즘과 절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확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증치세 특별 우대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현행 증치세 정책에는 면세, 간이과세, 차액기준 매출액 산정, 추가공제 등 여러 우대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기본 민생과 기본 과학연구에 대한 면세가 《증치세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우대정책의 통합, 연장 및 종료 등 내용은 증치세 특별 우대정책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이번 심의에서 통과한 《증치세법》은 지난 30 년간 증치세 심화 개혁 성과의 통합 및 요약으로 중국의 조세 법치화 과정에서 획기적인 진전입니다. 증치세법은 2026 년 1 월 1 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PwC 는 기업이 《증치세법》의 변경사항 및 《실시조례》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산업의 특수성과 기업 자체 특성을 결합시켜 동 정책이 기업의 각 방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증치세법》 시행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PwC 는 《실시조례》 및 기타 관련 문건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관찰과 인사이트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기업이 이를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석

1. 의견수렴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PwC 위챗공식계정 2019 년 《[통찰] 증치세법 곧 공포, 의견수렴본의 여러 핵심내용 주목 필요》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mp.weixin.qq.com/s/IG3ke5YpPCUmUjMF7AoXlg>
2. 초안 2 차 심사원고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PwC Newsflash 2023 년 Issue 2 《증치세 입법 과정의 중요한 발전 사항 해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pwccn.com/zh/china-tax-news/2023q1/chinatax-news-jan2023-2.pdf>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0) 3819-2531 younggi.y.cho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뉴스플래시(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https://shuijie.pwccn.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资料于 2024 年 12 月 27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www.pwccn.com

© 2024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